■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71-407.
http://doi.org/10.17948/kcs.2023..100.371

조선시대 과거 응시 자격과 赴擧都目

박현순(朴賢淳)*

목 차

1. 머리말
2. 官學을 통한 과거 응시 자격 부여
3. 향교 儒生案과 赴擧都目
4. 照訖講과 부거도목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과거 응시에 요구되던 학업 요건의 문제에 주목하여 응시자 명단인 赴擧都目이 작성되는 기준과 그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응시에 요구되던 요건과 과거 응시자의 모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기 국가는 관학에서의 수학 여부를 기준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士族層의 鄕校 수학 기피가 일반화되면서 명종 8년(1553) 學籍의 보유와 照訖講을 통한 학력 평가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 기준은 17세기에 재천명되어 인조 원년(1623)에 생원·진사시 소학 조흘강제도를 도입하였고, 효종 5년(1654)에는 官學 學籍 보유자에게만 科擧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18세기 후반 향교 儒生案이나 靑衿錄의 작성이 중지되면서 學籍을 통해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은 실효를 상실하였다. 하지만 각 고을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응시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응시자 명단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戶籍 入錄과 儒生 職役의 보유 여부로 응시 자격을 판정하였다.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학의 교육과 연계하여 과거 응시자를 관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국가가 요구하는 응시 자격을 갖춘 인원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과거 응시자의 증가 양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과거, 조흘강, 부거도목, 과거 응시 자격, 유생안, 청금록, 문과, 생원·진사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부교수.

1. 머리말

태종 14년(1414) 조선 건국 후 처음 시행한 알성문과에는 540여명이 응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고종 30년(1893)의 알성문과에는 157,593명이 응시하였다. 태종 14년에 비추어 보면 거의 300배에 이르는 인원이다. 물론 그 사이에 조선의 인구가 300배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300배에 이르는 응시자의 증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과와 생원·진사시 응시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도 있으나 특정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조대, 숙종대, 정조대, 고종대에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계기는 시기마다 달랐다.[1] 그 원인은 다양하게 거론되었다. 하지만 응시자의 구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변수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정황과 변수들을 고려하여 각 시기의 상황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과거 응시자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늘 등장하는 인식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2] 이에 따라 학업 요건을 기준으로 과거 응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양상을 염두에 두고 과거 응시에 요구되던 학업 요건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조선시대 과거 응시 자격 문제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검토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신분제의 측면에서 과거 응시 자격 문제에 주목하였다. 당시의 논의에서는 良人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良賤制의 구도 하에 양인에게 과거 응시가 허용되었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3] 예외적으로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던 서얼층은 16세기 후반부터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점점 확대되어 숙종 22년(1696)에 모든 서얼의 과거 응시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4]

---

1)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46-61면 및 230-249면.
2) 이 글에서 '과거'는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지칭한다. 제도 상의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 생원·진사시 등이 있지만 관행적으로는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묶어 '과거'로 인식하고, 무과와 잡과는 별개의 시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3) 이성무, 「조선초기 문과의 응시자격」, 『논문집』 9, 국민대, 1974, 77-84면.
4)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1999, 49-54면; 배재홍, 「조선후기 서얼 과거

법제적으로 서얼의 과거 응시가 완전히 허용된 것이다.

이와 달리 과거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조선 초기부터 官學을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생원·진사에게 성균관에 居齋한 날짜에 따라 圓點을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만 문과 응시를 허용한 것이다. 중종대에는 생원·진사는 물론 幼學에게도 원점과 학업 진도에 해당하는 書徒를 통해 응시 자격을 부여한 적이 있다. 명종 8년(1553) 「科擧事目」에서는 學籍과 照訖講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에는 이를 모델로 인조 1년(1623)에 생원·진사시 초시에 『소학』 조흘강을 도입하였고, 효종 5년(1654)에는 유학은 四學과 향교에 적을 둔 경우에만 과거 응시를 허용하도록 입법하였다.[5] 시기별로 그 기준은 달랐지만 학업 요건을 충족해야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은 통시적으로 고수되었다. 그 원칙은 엄밀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행정적으로는 각 군현에서 작성하는 응시자 명단인 赴擧都目을 통해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6] 곧 부거도목의 작성 기준이 과거 응시를 위한 실질적인 자격 요건이 된다. 문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부거도목은 科擧都目, 擧子都目, 赴擧案, 赴擧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고, 편의적으로 都目成冊, 都目冊, 都目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19세기에는 照訖成冊, 錄名成冊과 혼용되기도 하였다. 19세기 서유구의 『完營日錄』에서는 '赴擧儒生都目成冊', 경주부윤의 下帖에서는 '赴擧儒生都目'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것이 그 본래의 의미일 것이다. 부거도목을 작성한 사례는 태종대부터 고종대까지 통시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과거에 응시할 때 지속적으로 일정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행정적으로 그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격자의 成分과 官歷」, 『조선사연구』 2, 복현사학회, 1993, 184-196면.

5) 차미희, 「조선 후기 文科제도—응시자격을 중심으로—」, 『사총』 45, 고려대 역사연구소, 1996, 142-148면; 차미희, 앞의 책, 1999, 23-66면; 김경용, 「조선중기 과거제도 정비 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20-1, 교육사학회, 2010, 7-14면; 박현순, 앞의 책, 61-67면; 이상무, 「17-18세기 식년시 성균관 원점법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36-3, 한국교육사학회, 2014, 107-128면.

6) 차미희, 「『溪巖日錄』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文科 경상도 鄕試」, 『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303-308면; 박현순, 앞의 책.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부거도목의 작성 기준이라는 문제에 촛점을 맞추어 과거 응시 자격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과거 응시에 요구되는 학업 요건의 문제이다. 그리고, 응시자층의 범주는 과거 합격 이력이 없는 幼學層이다.[7]

그간 과거 응시를 위한 학업 요건이나 부거도목의 작성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논의가 대부분 16-17세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5세기 혹은 18·19세기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나아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시한 기준이 군현단위에서 그대로 적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조정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할 뿐이었고, 군현단위에서 부거도목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의 사정에 기반한 변수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면서 국가에서 제시하는 과거 응시 자격과 고을 단위에서의 부거도목 작성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관학을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고 한 국가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효종 5년(1654) 學籍者 응시 원칙이 수립된 이후의 부거도목 작성, 18세기 중반 이후 학적자 응시 원칙이 실효를 상실한 이후 부거도목의 작성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 응시에 요구되던 요건들을 검토하고 과거 응시자의 모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2. 官學을 통한 과거 응시 자격 부여

1) 圓點과 書徒를 통한 응시 자격 부여

과거 응시 자격은 흔히 신분제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고려시대에도 과거에 응시할 때 그에 상응하는 학력 조건을 요구한 경우들이 있었다. 예종 5년(1110) 국자감시에 합격한 경우라도 국학에서 3년 이상 수학하거나 관료로 30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예부시 응시자격을 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8]

---

7) 조선시대 과거와 관련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생원·진사만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생원·진사가 아니라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이상무, 「조선시대 문과 응시자격에서 소과 입격의 문제 검토」, 『한국교육사학』 40-4, 한국교육사학회, 2018, 175-202면.

8)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2, 106-110면.

국학 3년 수학이라는 조건은 관학과 과거를 연계시켜 인식한 것이다.

조선이 개창된 직후에 반포된 태조의 즉위 교서에서도 문과 응시자에 대한 대목이 있다. 도성은 成均館正錄所, 지방은 각도 안렴사가 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經書를 익힌 자를 뽑아 成均館長貳所에 보낸다는 내용이다.[9] 이 역시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경서를 익힌 자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 과거를 연계시켜 인식한 것이다.

조선의 건국자들이 구상한 학교와 과거의 관계는 태조 4년(1395)에 입안한 科擧式을 통해 그 이상을 엿볼 수 있다. 이 과거식은 『태조실록』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태조대의 수교를 모아 편찬한 『經濟六典』에 수록된 내용이 『세종실록』에 전한다. 그 가운데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는 성균관에 四書五經齋를 설치하고, 성균관의 생도는 물론 전국의 생도도 성균관의 사서오경 강서시험을 통과해야만 문과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10] 학교에서의 수학과 평가를 통해 四書五經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연마한 경우에만 문과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성균관에 사서오경재를 설치하고자 한 것은 공민왕대의 모델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사서오경재, 곧 九齋는 설치되지 못했고, 이를 통해 문과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구상도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태종 때부터 생원·진사에게는 거재 일수에 따라 圓點을 부여하고, 일정 이상의 원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문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종 11년(1411)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는 문과 초시 중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館試에 응시할 때 원점 300점을 요구하였는데,[11] 태종 17년(1417)에 새로 제정한 과거식에서는 관시는 물론 향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였다.[12] 곧 생원·진사가 문과에 응시할 때는 관시·한성시·향시를 물론하고 모두 원점 300점을 요구한 것이다.

그 후 중종대에 생원·진사의 한성시·향시 응시 기준을 원점 150점으로 조정하면서, 문과 초시 중 관시는 300점, 한성시·향시는 150점이 응시

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10) 『세종실록』 권69, 세종 17년 9월 27일 을미.
11)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4일 계사.
12)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 기사.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원점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성균관에 거재하며 일정 이상의 원점을 얻어야만 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원칙은 견지되었다.[13] 別試의 경우 시험 때마다 그 기준이 달랐으나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생원·진사에게는 원점이나 居齋 여부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였다.[14]

생원·진사가 아닌 幼學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태조 4년(1395) 12월 예조에서 상정한 과거식에서는 생원·진사는 물론 한성의 五部와 외방 군현의 생도도 모두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사서오경의 고강을 통과해야 문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이 좌절되고 생원·진사에게 원점을 적용하면서 생원·진사와 幼學의 과거 응시 기준이 이원화되었다.[15]

태종 17년(1417) 문과제도를 개편하면서 제정한 과거식에서는 생원·진사에게는 원점을 요구하였지만 향시에 응시하는 유학에 대해서는 거주지 수령이 경서의 학습 정도를 기록하여 추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16] 이 내용은 세종 26년(1444) 문과제도 개편 때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한성부에서는 部學의 學官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작성한 응시자 명단인 都目狀을 예조와 관찰사에게 보내고, 이에 근거하여 試所에서 응시 등록 절차인 錄名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목장이 곧 赴擧都目이다. 그리고 부거도목을 작성할 때에는 도성에서는 部學의 學官이, 지방에서는 향교의 교관과 학장이 유생의 학업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17] 곧 部學과 향교의 교관이 지원자의 학업 실적을 평가하여 부거도목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

13) 이상무, 앞의 글, 2014, 109-116면.
14) 차미희, 앞의 글, 1996, 142-147면; 앞의 책, 1999, 54-66면.
15) 조선전기에는 유학도 성균관에 수학하며 원점을 획득해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본 견해도 있다(소순규, 「朝鮮前期 幼學의 大科 급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보』 70, 고려사학회, 2018, 247 -281면). 15세기에는 알성시, 별시 때 성균관과 사학의 유학에게도 수학기간을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를 식년시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태종 17년(1417)과 세종 26년(1444)의 문과제도 개편 때에도 생원·진사와 생원·진사가 아닌 경우의 응시 절차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이상무, 앞의 글, 2018, 190-194면 참조).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 기사;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4일 갑신.
16)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 기사.
17)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4일 갑신.

그후 성종대부터는 유생들의 학교 수학과 학업을 장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유학들에게도 원점을 적용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성종 8년(1477) 별시 때는 四學 유생에게도 원점을 적용하였고,[18] 연산군대에는 향시와 한성시 응시에도 원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종 11년(1516)에는 경외의 유학도 원점 200점을 얻어야만 향시와 한성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19] 이로써 생원·진사에게만 요구되던 원점이 경외의 모든 유생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20]

성종대 이후 유학에게도 원점을 요구하려 한 것은 성균관 유생들에게 원점을 요구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유학의 사학과 향교 수학을 장려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개국 이후 지속되어온 학교의 설치와 정비, 교관의 파견이 일단락되고 외방에서도 학교제도가 완비되면서 이제 유학들의 학교 수학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다.

유학의 원점 적용은 유생들의 호응 부족으로 곧 난항에 부딪혔다. 그 대안으로 중종 30년(1535) 독서하는 진도를 기록하는 書徒를 작성하고 이를 圓點으로 계산하여 향시와 한성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書徒法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곧 폐지되고 말았다.[21] 성균관과 달리 사학과 지방 유생들의 원점이나 서도 규정은 오래 시행되지는 못했다.

중종대까지 과거의 응시 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문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생원·진사시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태종 4년(1404) 사간원이 五部의 생도 중 5경에 능통한 자를 생원시에 응시하게 할 것을 청했고, 태종 7년(1407) 權近이 생원시의 예비시험으로 『소학』을 고강하게 할 것을 청한 적이 있다.[22] 하지만 이 제안이 시행으로 이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어 태종 13년(1413) 성균관에서는 四書一經의 講誦와 疑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생원시에

18)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8일 신사.
19) 『연산군일기』 권48, 연산군 9년 2월 18일 을묘;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8일 무자;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30일 경술.
20) 차미희, 앞의 책, 39-46면.
21) 차미희, 같은 책.
22)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8월 20일 기축;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24일 무인.

응시하게 하자고 청했다. 이 제안은 이듬해 생원시에 初試制度를 도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23] 세종 8년(1426)에는 생원시에 『소학』과 『가례』를 강하는 學禮講을 도입하였다.[24] 그러나 학례강은 초시가 아닌 회시의 조흘강이었다. 유학이 문과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거주지 수령이 부거도목을 작성한다는 규정만 적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때에도 그 이상의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듯 하다. 중종대 원점과 서도 역시 주로 문과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과에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선 건국 이래 국가는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의 관학 수학을 기준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성종-중종대에는 유학에게도 원점과 서도의 법을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비록 지속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국가가 관학 교육과 과거 응시 자격을 연계시키고자 하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學籍과 照訖講을 통한 응시 자격 부여

중종대에는 유학에게 원점과 서도를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사족의 자제들이 향교에서 수학하지 않는다는 논의들이 자주 등장한다. 사족자제들은 향교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며 스스로 '業儒'라고 칭하고 교생이 된 자들은 모두 軍役을 피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이다.[25] 국가에서 원점과 서도를 매개로 유학의 관학 수학을 강제하려 한 것은 새롭게 대두된 사족층이 관학 수학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었다.

이즈음인 명종 1년(1546)에 반포된 外方學校申明節目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향교에 생원·진사로 선임한 교관을 파견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교생의 歲貢吏 충원과 잡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26] 향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생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족 유생들을 향교로 유인하려고 한 것이다.

---

23)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6월 30일 정축;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1월 20일 을미.
24)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1월 27일 임술.
25) 『중종실록』 권81, 중종 31년 1월 11일 정묘; 『명종실록』 권8, 명종 3년 9월 11일 계미.
26) 『명종실록』 권3, 명종 1년 6월 16일 신축.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교생의 세공리 충원과 잡역 문제이다. 향교의 교생은 군역이 면제되는 특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중앙 각사의 서리가 부족해지면서 예종대부터 각읍의 교생 가운데 歲貢生徒를 차출하여 중앙각사의 서리로 복무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유생을 서리로 격하시키는 처사라는 반대도 있었지만 나이가 많고 학업이 부진한 자로 충원 대상을 제한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27] 이외에도 향교 교생들에게는 城隍祭, 祈雨祭 봉행 등 官府의 사역이나 일종의 장학기금인 寶나 學田의 所出 관리 등 각종 업무가 부과되었다. 향교 교생에게 부과되는 역은 교생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賤役으로 인식되어 사족층이 향교 입속을 기피하는 빌미가 되었다.[28] 그러나 향교에 입속하지 않고 閑遊하는 경우는 군역에 충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그리하여 향교에 입속하되 교생과는 구분되는 사족유생을 지칭하는 '業儒'라는 명목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29]

이런 가운데 명종 8년(1553) 과거제 개편이 단행되었다. 이 개편안은 여러 가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학의 과거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과거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四學이나 鄕校에 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생원·진사시와 문과에 응시하기 전에 『중용』과 『대학』의 背講 시험을 통과해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30]

여기에 성종-중종대에 유학에게 요구한 圓點이나 書徒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적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의 수학을 강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과거에 응시할 때 『중용』과 『대학』의 背講 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만 과거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실적으로 사족자제들이 사학과 향교에서 수학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學籍과 학력 평가를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과거사목』에 정리된 조흘강은 3년에 1번씩 식년 전해 1월 20일부터

---

27) 『성종실록』 권199, 성종 18년 1월 23일 갑자.
28) 「(安東鄕校)萬曆九年十月日校中完議」(『고문서연구』 6, 한국고문서학회, 1994, 109-118면 수록); 琴輔, 『梅軒集』「鄕校重修立約序」
29)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26일 정미;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8월 27일 병자.
30) 김경용, 앞의 글, 2010, 7-14면.

시행되었다. 이문건의 『묵재일기』에는 명종 12년(1557)과 명종 21년(1566)의 1월에 조흘강을 시행하였다. 또 이문건의 손자가 『중용』과 『대학』에서 모두 粗의 성적을 받아 고강을 통과하고 '照訖立案'을 받아 왔다는 기록이 있어서 증명서로 立案을 발급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31] 그러나 『대학』과 『중용』의 고강 규정은 명종 21년(1566)에 폐지되었다.[32]

조흘강은 폐지되었지만 학교에 입속해야만 과거 응시를 허락한다는 원칙은 선조 15년(1582) 李珥가 입안한 「學校事目」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여기서는 모든 유생이 성균관이나 사학, 향교에 적을 두게 하고, 과거 때 학교의 교관과 유생대표가 함께 자격을 심사하여 과거 응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33]

그 후 효종 5년(1654) 4월에 學籍에 들지 않은 유생은 과거 응시를 불허한다는 규정이 다시 도입되었다. 이해 2월에 사학의 교수와 훈도를 복구하면서 四學의 靑衿錄도 복구하여 京中의 유학은 모두 청금록에 적을 두게 하였다.[34] 이어 4월에 경향의 유학은 모두 관학에 적을 두게 한다는 취지로 학적 입록자에게만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다.[35] 이 규정은 이후에도 계속 신칙되었는데,[36] 영조 30년(1754)에 시행된 대증광시의 과거사목에도 실려 있어서 당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7] 하지만 순조 3년(1803)의 과거사목에는 더 이상 이 내용이 없고, 신칙을 명하는 논의도 보이지 않아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38]

한편 인조 원년(1623)에는 생원·진사시 초시에 조흘강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 그 논의 과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조판서 申欽이 故事를 근거로 제안한 데서 명종대의 전례가 모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적은 『중용』과 『대학』에서

31) 李文楗, 『默齋日記』 1557년(명종 12) 정월 18일 임신 및 19일 계유, 23일 정축; 같은 책, 1566년(명종 21) 정월 24일 병진.
32)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8월 8일 병인.
33) 李珥, 『栗谷全書』 권15, 「學校模範」(附 學校事目)
34) 『승정원일기』 효종 5년 2월 22일 계미.
35) 『승정원일기』 효종 5년 4월 30일 기축;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영남대 출판부, 1992, 207면, (예안향교)「別儒草案」
36) 『승정원일기』 현종 11년 9월 11일 을축;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2월 25일 무인.
37) 『科擧謄錄』(奎12909) 제14책, 076b면 甲戌(1754)正月初十日.
38) 柳台佐, 『監市謄錄』「來關」(癸亥 7月 日)

『소학』으로, 성격은 생원·진사시 응시를 위한 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39]

그 후 효종 10년(1659)에 祭酒 宋浚吉의 제안에 따라 四學의 교육 과정을 개편하면서 조흘강제도도 다시 한번 신칙되었다.[40] 이후에도 간간이 조흘강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한 경우는 있었으나 그 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정조대에 시소에서 시행하던 조흘강을 각 고을 수령이 담당하게 하는 중대한 개편이 있었다. 이후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그 기조는 고종 31년(1894)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명종대 시행된 초시 조흘강은 생원·진사시와 문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되었으며, 식년 전해 가을에 시행되는 초시와 별도로 식년 전해 정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달리 인조 1년(1623)부터 시행된 조흘강은 생원·진사시 초시 직전에 시행되어 생원·진사시의 응시자격시험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동일했던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응시 요건이 이원화되었다. 여기에서 왜 생원·진사시에만 조흘강을 도입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그 의도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조선 초기 이래 국가는 官學을 통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중종대까지는 圓點과 書徒로 표현되는 居齋 여부를 통해 그 자격을 부여하려 한 반면 명종대 이후에는 학적 여부와 照訖講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려 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사학이나 지방 향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따랐다. 그러나 국가가 학교를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 하였다는 점은 일관된 것이었다.

3. 향교 儒生案과 赴擧都目

1) 향교 유생안과 청금록의 작성 추이

學籍과 照訖講을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먼저 학적에 기초하여 赴擧都目을 작성하고, 이 부거도목에 의거하여 조흘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과

39) 『인조실록』 권2, 인조 1년 5월 15일 갑진; 『승정원일기』 인조 1년 8월 10일 무진.
40)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2월 16일 정축; 『승정원일기』 현종 1년 1월 4일 경신.

거 응시 자격과 응시자의 범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적 상의 유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지방 향교의 사례를 통해 관학의 학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향교에 소속된 유생의 명부는 校案, 校生案, 校儒案, 儒案, 儒生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졌다. 그런데, 校生에 비양반이라는 신분적 의미가 부여되면서 '교생'과 '유생'을 구분하고 '교생안'과 '유생안'을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양반들이 참여하는 향교 소속 유생의 안을 儒生案으로 지칭하였다.

국가에서 향교를 설치한 이래 향교의 生徒는 校生으로 일컬어졌다. 그런데 중종 33년(1538) 전라도 관찰사 金正國이 열읍을 순시하며 유생들의 講經과 製述을 시행한 사례에서는 校生과 業儒를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41] 사족층이 자신들을 '校生'과 차별화하여 '業儒'라고 칭하면서 국가에서도 향교의 생도들을 교생과 업유로 나누어 파악하였던 것이다.

李文楗(1494-1567)의 『默齋日記』에 따르면 당시 성주목 향교에서는 '校案'과 '業儒案'을 나누어 작성하고 業儒層 有司인 '業儒堂長'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42] 이 기록은 명종 8년(1553) 학적 보유자에게만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는 事目이 반포되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사목 상의 학적은 교생안과 업유안을 포괄하였을 것이다. 柳希春의 『眉巖日記』에도 선조 4년(1571) 충군을 위해 고강을 할 때 校生, 業儒, 童蒙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인다.[43] 童蒙을 향교 입학 연령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간주하면 실제 향교의 생도는 校生, 業儒로 파악한 것이다.

그 후 선조 15년(1582) 이이가 작성한 「學校事目」에는 '額內'와 '額外'의 개념이 등장한다. '額內'는 관에서 공궤하는 정원 내의 유생을 의미하며, '額外'는 정원 외의 유생으로 자비 청강생을 가리킨다.[44]

비슷한 시기인 선조 14년(1581)에 작성된 안동향교의 學規에서도 '액

41)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9월 30일 경자.
42) 李文楗, 『默齋日記』 권5, 1552년(명종 7) 10월 29일 무인; 같은 책, 1553년(명종 8) 10월 초8일 신사; 같은 책, 1554년(명종 9) 11월 초4일 신축.
43) 柳希春, 『眉巖日記』 제6책, 신미(1571) 【節目】
44) 李 珥, 『栗谷全書』 권15, 「學校模範」(附 學校事目)

내'와 '액외'의 구분이 보인다. 그런데, 안동향교의 구분은 이이의 구분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안동향교의 액내유생은 立番儒生으로 번을 나누어 향교에서 居齋하며, 朔望禮 등 향교에서 주관하는 제례의 執事를 담당하였다. 반면 액외유생은 입번의 의무가 없이 社癘·城隍·祈雨·祈晴祭 등 관에서 주관하는 제례의 집사를 담당하였다.[45] 액내유생은 실질적인 유생으로 향교의 운영을 담당하고, 액외유생은 관에서 교생에게 부과하는 역을 담당한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업유와 교생의 구분과 유사해 보인다.

17세기에는 액내와 액외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는 이이처럼 정원의 내외로 액내와 액외를 구분한 경우도 있고, 안동향교처럼 신분에 따라 액내와 액외를 구분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광해군 12년(1620)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유생안, 후자의 예로는 인조 2년(1624)-인조 18년(1640) 진도향교의 유생안을 들 수 있다.[46] 이즈음에는 액내와 액외의 구분이 일반화된 듯하지만 지역에 따라 구분의 기준이 달랐다.

인조대에는 교생을 고강하여 낙강 교생을 군역에 충원하는 낙강교생 충군법이 도입되면서 사족층의 교생 입록이 늘어나고 교생의 신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때의 논의에서는 액내와 액외의 구분에 신분 개념이 분명하게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때에도 지역마다 관행이 달랐다. 인조 4년(1626) 사헌부의 계사에 따르면 사족들은 영남에서는 액내, 그 외 지역에서는 액외로 편제되어 있었다.[47] 그런데, 양남지방과 달리 경기도는 사족들이 아예 校籍에 올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48] 충청도에서는 양반들이 여전히 '業儒'를 칭하며 향교에 적을 두지 않고, 백성의 자손과 양반 서얼이 교생으로 올라 있었다고 한다.[49] 당시의 논의는 도를 단위로 진행되었으나 고을 단위로 내려가면 그 차이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45) 「萬曆九年十月日校中完議」(『고문서연구』 6, 한국고문서학회, 1994, 109-118면 수록)
4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영남대 출판부, 1992, 65면, (예안향교) 「儒案」; 전라남도 편, 『전남의 향교』, 전라남도, 1987, 782-793면, 진도향교 편 「萬曆舊案」
47)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11월 21일 경인.
48) 『승정원일기』 인조 4년 7월 20일 경인.
49) 『學校謄錄』(奎12877), 016b면, 辛巳七月初三日.

이런 가운데 효종 5년(1654) 4월에 學籍에 입록된 유생만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반포되었다. 四學에서는 靑衿錄, 지방에서는 향교 유생안이 준거가 되었다. 이 내용은 이후 「科擧事目」에도 삽입되어 준용되었다.[50]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생안의 개정이 불가피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향교 유생안 입록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 확인된다. 현종 2년(1661) 예안에서는 '士族과 中人을 막론하고 試講에 능하고 科擧都目을 원하는 자'를 유생안에 입록하도록 했다.[51] 과거 응시를 희망한 사족과 중인을 향교의 유생으로 입록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과거에 응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별도로 '執事案'이라는 명부에 등재하였다.

현재 예안향교에는 숙종 7년(1681)-영조 52년(1776) 사이의 유생안 52건이 남아 있는데 항목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 등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액내'는 사족으로 예안향교의 정원에 해당하는 30명이다. '별유'는 사족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가리키는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 그리고, '액외'는 일반양인층, '교생'은 서얼의 후예인 庶族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은 신분적으로 사족, 일반양인층, 서족을 구분하고 사족을 다시 정원 내외로 구분하는 이중적 구성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효종 5년(1654) 학적을 근거로 과거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의 도입으로 사족유생들의 유생안 입록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사족층의 신분의식과 정원 내외라는 개념이 결부되며 유생안의 구성이 한층 복잡해졌다. 17세기 전반 대개 액내-액외으로 구성되었던 유생안은 17세기 후반에는 액내, 액외를 기본으로 校生, 別案, 別儒, 老儒, 業儒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대개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은 일차적으로 士族과 비사족, 서얼 등 신분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항목 간에 교차적으로 입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52] 그러나 지역별로 항목이나 입록의 기준은 서로 달랐다.

현종 5년(1664) 상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교생이 '平人'이라는 이유를

50) 『科擧謄錄』(奎12909) 제3책, 090a면 庚戌九月初十日
5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II, 영남대 출판부, 1992, 207면, (예안향교) 「別儒草案」
52)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 8-26면.

내세워 별도의 청금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유생은 靑衿儒生과 校生으로 구분되었다. 그 역할도 이원화하여 사족인 청금유생은 大祭와 公會 참여를 의무로 하고, 교생은 立番과 운영 실무를 담당하였다.[53]

17세기말 즈음부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상주와 같이 유생안과 구분하여 별도의 靑衿錄을 작성하는 지역이 늘어났다.[54] 이에 대해 충청도와 경기도에서는 이전부터 '靑衿錄' 혹은 '儒林案'을 작성한 것으로 이야기되었다.[55]

한편 풍기에서는 효종 6년(1655)에 유생안 입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숙종 20년(1694)-숙종 29년(1703) 사이에는 액내, 업유, 액외, 동몽으로 구성된 유생안을 작성하였다.[56] 그런데, 숙종 28년(1702) 관찰사에게 경상도의 액내유생은 圈點을 통해 선발된 사족이라고 호소하여 액내유생의 고강을 면제받았다.[57] 이에 따라 액내유생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현재 숙종 32년(1706)부터 작성된 『額案』이 전한다.[58] 광주향교에서도 현종 5년(1664)부터는 풍기향교의 『額案』과 같이 액내유생안을 『隨行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작성하였다.[59] 『액안』이나 『수행안』은 명칭은 다르지만 그 성격은 상주의 청금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족 유생안이다.

통시적으로 보면 액내와 액외의 구분으로 시작된 유생안은 사족층의 신분

---

5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Ⅲ, 영남대 출판부, 1992, 77-79면, 상주향교 「靑衿錄完議」

54) 윤희면, 앞의 책, 9-26면.

55) 『승정원일기』 숙종 7년 8월 23일 계묘.

5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영남대 출판부, 1992, 615면, (풍기향교) 「雜錄」 士林立議; 같은 책, 372-379면 (풍기향교) 校案.

57)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영남대 출판부, 1992. 631-632면 (풍기향교) 「雜錄」 巡使呈文一額內不應講事(임오 3월 30일) 및 632면 亞使呈文一額外考講時事一(임오 5월 18일). 이 책에서는 『잡록』의 작성연도를 1752년-1780년으로 파악하였으나 유생안에서 확인되는 도유사 채응해, 재임 남창하, 하성도 등의 생존시기를 고려하면 1702년으로 파악된다. 하성도와 남창하는 기묘년(1699) 유생안에 이름이 올라 있다.

5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영남대 출판부, 1992. 385면 額案. 이 책에서는 첫 액안의 작성시기인 병술년을 1766년으로 파악하였으나 교안과 비교하면 1706년으로 확인된다.

59)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1987, 977-980면, 광주향교 편 〈표1〉 및 〈표2〉

의식과 낙강교생충군정책, 향교 교생의 법적 정원 등을 반영하며 구성항목이 늘어나다가 사족층이 청금록, 額案과 같은 별도의 안을 만들어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금록이나 액안은 사족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단일하였다. 이에 따라 청금유생은 동재유생으로, 교생은 서재교생으로 지칭되어 유생과 교생이 분화되었고, 그 명부도 청금록과 서재교생안으로 분화되었다.[60] 그러나 이런 추세 속에서도 지역별로 유생안이나 청금록을 작성하는 방식은 다양하였다. 이에 따라 학적에 기초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 역시 지역별로 다양하게 적용될 소지가 컸다.

그런데, 18세기 중반부터는 점점 『유생안』과 『청금록』의 작성도 중지되어 갔다. 각 고을의 鄕案이 사족층 내부의 갈등으로 작성이 중지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게다가 18세기 후반에는 향안과 청금록의 작성을 기피하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가 등장하였다. 서얼의 鄕曲通淸이 그것이다.

영조 48년(1772) 8월 서얼의 淸職 임용이 허용된 직후 경상도 서얼유생들은 3,000여 명의 이름으로 鄕曲에서의 通淸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서얼유생들은 鄕案과 향교의 儒生案, 서원의 院生案 通錄를 청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사족과 서얼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는 성균관 식당의 坐次를 신분과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앉는 序齒로 전환하자고 청하였다. 영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조 1년(1777) 정유절목, 순조 23년(1823) 계미절목을 거치며 서얼은 서원과 향교의 首任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중간에 폐지되었던 성균관의 서치도 정조 15년(1791) 부활되었다.[61] 이제 더이상 사족들이 향교를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서얼의 향곡 통청과 관련해서는 특히 성균관의 序齒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균관 식당에서 사족과 서얼의 좌차를 차등화한 것이 지방향교에서 사족과 서얼을 차별하는 근거였고, 성균관 序齒의 부활은 향교나 서원에서 사족들의 서얼 차별을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

60) 윤희면, 앞의 책, 11-26면 및 29면 〈표〉 1-4 참조.

61) 李鍾日, 「18·19세기의 서얼소통운동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58, 한국사연구회, 1987, 23-82면; 배재홍,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서얼의 존재양태와 향전」, 『복현사림』 15, 경북사학회, 1992, 39-67면.

이에 따라 향안이나 청금록의 개정이 시도되었다.[62] 그러나 사족층의 저항도 완강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얼의 학교 통청으로 아예 유생안과 청금록의 작성이 중지되어 버렸다. 담양향교에는 숙종 13년(1687)부터 영조 43년(1767) 사이에 작성된 청금록이 남아 있으나 이후 청금록은 작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순조 1년(1801)부터는 이를 대신하여 齋任의 명단을 수록한 『靑衿別案』을 따로 작성하기 시작였다.[63] 이 안은 전체 유생안이 아니라 齋任案이나 執事案에 해당된다.

18세기 후반 어느 시점에 청금록의 작성이 중단된 것은 비단 담양만의 일은 아니었다. 현재 무안향교, 나주향교, 자인향교 등에 19세기 청금록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 19세기 말에 작성한 것이다. 청금록은 19세기말에 다시 작성되기 시작하여 식민지시기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등장한 사족 유생안으로서의 청금록은 18세기 중반 이래 점차 소멸되어 갔다.

2) 관학 학적과 부거도목

국가가 官學을 통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赴擧都目의 작성이었고, 작성 주체는 수령이었다. 하지만 태종・세종대의 규정을 보면 도성에서는 部學의 學官이, 지방에서는 향교의 교관과 학장이 유생의 학업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작성자는 관학의 교관이었다.[64]

이이의 「학교사목」에서는 이에 더하여 유생대표들도 부거도목의 작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성균관과 사학은 학교의 관원과 유생 대표인 堂長, 掌議, 有司, 지방 향교는 수령, 교관과 유생대표가 함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65] 응시 자격을 검증하고 부거도목을 작성하는 주체는 학교 관원과 수령이지만 그 과정에 유생들의 公論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

6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Ⅲ, 영남대 출판부, 1992, 81면, 상주향교 「儒案節目」;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Ⅰ, 영남대 출판부, 1992, 68-69면, 청하향교 「新頒敎通淸案」

63)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1987, 399면, 담양향교 「靑衿別案序」

64)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 기사;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4일 갑신.

65) 이이, 『율곡전서』 권15, 「학교모범」

선조 14년(1581) 안동향교에는 釋奠祭 때 獻官과 執事의 일을 기피하는 자는 향교에서 부거도목을 불허하고 수령에게 고하여 停擧시킨다는 규정이 있었다.[66] 실질적으로는 향교의 교관과 유생들이 도목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령은 결재권자에 가깝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향교 교관의 파견이 중지되었다. 대신 고을 사족 중에서 공론으로 선임한 上齋有司나 都有司가 향교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다.[67] 이런 구조 하에서는 사족층이 유생안의 작성 뿐 아니라 부거도목의 발급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효종 5년(1654) 학적을 기준으로 부거도목을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포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유생안의 개정도 뒤따랐다. 하지만 유생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지역마다 달랐던 만큼 부거도목을 작성하는 방식도 지역마다 달랐다.

현종 2년(1661) 예안에서는 과거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사족은 執事案이라는 별도의 안을 작성하고 과거 응시, 곧 부거도목의 발급을 희망하는 자만 유생안에 등재하였다. 그리고, 사족과 '중인'을 막론하고 유생안에 등록된 자들에게는 모두 부거도목을 발급해 주었다. 예안에서는 校籍에 근거하여 부거도목을 발급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였고, 아예 과거 응시를 희망하는 자로 유생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유생안에 도산서원의 원생안이 반영되도록 하였다.[68] 향교와 도산서원이 협의하여 향교 유생안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부거도목을 작성하는 구조였다.

현종 5년(1664) 상주에서는 사족의 청금록과 향교 교생안을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부거도목은 이와 별도로 향교의 도유사와 도남서원의 재임이 상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69] 그 방식은 다르지만 향교와 서원의 협의에 의해 응시자 명단을 작성하였다는 점은 예안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66) 「(安東鄕校)萬曆九年十月日校中完議」(『고문서연구』 6, 한국고문서학회, 1994, 115면 수록)
67) 有司가 생원·진사 출신인 경우 '上齋有司', 유학인 경우 '都有司'로 구분하여 지칭한 것으로 나타난다.
6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영남대 출판부, 1992, 207면, 예안향교 「別儒草案」
6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Ⅲ, 영남대 출판부, 1992, 77면, 상주향교 「靑衿錄完議」

예안에서는 향교와 서원의 협의가 유생안에 반영되도록 한 것과 달리 상주에서는 부거도목에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상주의 과거 합격자 가운데에는 청금록에 입록되지 않은 인원도 다수 확인된다.[70]

한편 전라도의 경우 유생안 가운데 赴擧案이라는 명목을 두거나 별도로 작성한 부거안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다. 전라도 강진, 무안, 남평과 능주, 순천, 무안이 그 예이다.

강진향교에는 숙종 13년(1687) 이전에 작성된 청금록 1건이 있는데, 항목이 隨行案과 赴擧案으로 나뉘어져 있다.[71] 무안향교에는 숙종 9년(1683) 이전에 작성된 유생안 3건에 '赴擧別案'이 포함되어 있다.[72] '부거안'이나 '부거별안'이 다른 항목과 어떻게 구분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인원이 제일 많아서 예안과 마찬가지로 유생안이나 청금록을 아예 부거도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남평향교의 경우 숙종 27년(1701년) 유생안에 靑衿錄(223명), 赴擧案(26명), 額內(30명), 別案(104명), 童蒙(52명)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총 435명의 명단을 수록하였다.[73] 능주향교의 영조 18년(1742) 『儒案』에는 청금록 243명과 赴擧 43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74] 두 사례에서는 청금유생과 부거유생을 구분하여 싣고 있는데, 청금유생이 200여명인데 비하여 부거 유생은 각각 26명과 43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으며, 두 안에 중복되어 입록된 인물은 없다. 한편 순천에는 영조 2년(1726), 영조 11년(1735), 영조 33년(1757)에 작성한 『청금부거안』이 남아 있다. 이 중 영조 2년(1726)의 『청금부거안』은 『청금안』, 『청금수행안』과 함께 작성하였는데, 세 안에 중복되어 수록된 인물은 없다. 영조 11년(1735)에는 『청금부거안』과 『청금수행안』을 함께 작성하였는데, 역시 서로 중복되는 인물은 없다. 세 안은 각기 다른 성

70) 유기선, 「17-18세기 尙州鄕校의 靑衿儒生」, 『한국서원학보』 5, 한국서원학회, 2017, 46-51면.
71) 부거안에 입록된 吳喜謙은 숙종 13년(1687)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따라서 작성 시점은 1687년 이전이 된다.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1987, 35면, 강진향교 『靑衿錄』
72)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1987, 448면, 무안향교 〈표1〉 무안향교 儒案(13冊)
73)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1987, 222면, 남평향교 「儒案」(1701)
74)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1987, 283면, 능주향교 「壬戌五月日綾州儒案」(1742)

격을 지닌 안으로 보이지만 『청금안』과 『수행안』, 『청금부거안』의 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남평, 능주, 순천의 사례에서 보이는 부거안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官에서 별도의 부거안을 작성하여 과거 응시자를 관리하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유생안과 부거도목을 작성하는 기준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향교에서 사족 유생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유생들의 과거 응시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비록 청금록을 작성하며 교생이라는 명목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족 유생들은 여전히 향교에 적을 두고 있었고, 유생안과 청금록이 부거도목을 발급하는 준거가 되었다.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족유생, 청금유생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예안에서는 숙종 7년(1681)부터 영조 52년(1776)까지의 유생안이 남아 있는데, 1680년대 60-70명에 불과하던 사족유생의 숫자는 1770년대에 이르면 230여명에 육박하였다. 담양의 청금록에서도 숙종 15년(1689)에는 143명이었던 청금유생이 영조 43년(1767)에는 249명으로 늘어났다. 상주의 청금유생도 숙종 18년(1692) 47명에서 영조 14년(1738) 267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사족유생, 청금유생의 증가는 과거 응시자의 증가 양상과 그 궤를 같이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중반 즈음부터 유생안·청금록의 작성이 중지되는 지역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영조대 말 정조대 초반에 단행된 서얼의 향곡 소통 이후 청금록의 작성은 사실상 중지되었다. 유생안의 작성이 중지된 시점에서 무엇을 근거로 부거도목을 작성하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4. 照訖講과 부거도목

1) 정조대 『소학』 조흘강제도의 개편

향교 유생안과 청금록의 작성이 중지된 시점에서는 學籍을 기준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격 기준을 마련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는다.

대신 생원・진사시 초시에 응시하기 전에 시행하는 자격시험인 照訖講제도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정비되었다. 정조 15년(1791)에는 한성시, 정조 18년(1794)에는 향시의 조흘강 제도를 개편하였고, 그 뒤 정조 21년(1797)과 순조 18년(1818)에 다시 한번 제도의 정비가 있었다.

인조대 도입된 조흘강은 명종대와 마찬가지로 初試 합격 이력이 있는 자는 면제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초시 때마다 매번 다시 응시해야 했다. 그러나 영조대의 기록에 따르면 한번 조흘강을 통과하면 다시 고강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75] 제도상으로는 매번 고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당히 느슨하게 운영된 것이다.

영조 30년(1754) 부교리 채제공에 따르면 당시에는 『소학』 입교편의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1구만 강하거나 아예 고강을 생략하고 講冊에 이름만 기재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초시 조흘강은 실효는 없이 형식만 남은 시험으로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하였다.[76]

그러다가 정조 15년(1791)에 사문화된 규정을 복구하고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한성시의 조흘강을 개편하였다. 과거에 응시할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과거에 응시하여 과장이 문란해졌다는 인식이 그 근거였다. 개편의 주내용은 시험 한달 전부터 조흘강을 시행하고 시종신을 참시관으로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조흘강을 면제하던 생원・진사시 초시 합격 이력자에게도 조흘강을 요구하였다.[77]

정조 18년(1794)에는 향시의 조흘강을 강화하는 조처가 뒤따랐다. 주 내용은 시험장의 錄名所에서 시행하던 조흘강을 시험에 앞서 각 고을에서 수령이 시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 지방 유생이 한성시에 응시할 때는 각 고을에서 공문을 발급하도록 하였다.[78] 지방 유생의 한성시 응시가 늘어나면서 향유들의 京試 응시를 관리하기 위한 조처였다. 한때 지방유생들의 한성시 응시를 아예 금지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만큼 정조대 후반에는 지방

75)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8월 23일 갑신.
76)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5월 12일 경인.
77)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8월 13일 을묘;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8월 13일.
78)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2월 23일 신사.

유생들의 한성시 응시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그 후 정조 24년(1800) 4월에 다시 한번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때의 논의 내용이 순조 1년에 정식으로 채택되었다.[79] 그리고, 순조 18년(1818) 科場抹弊節目을 반포하면서 조흘강제도는 다시 한번 신칙되었다.[80] 두 차례의 개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의 조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정조 18년(1794)의 규정을 따랐다.

정조대 개편된 조흘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 경우 각 고을의 수령이 조흘강을 주관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고을별로 부거도목을 작성하여 試所에 보내고 시소의 녹명관이 조흘강을 시행하여 응시 가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수령이 조흘강을 통해 응시가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제 운영에서 수령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외에 조흘강의 시험 방식에도 주목되는 점이 있다. 조흘강은 원래 『소학』을 臨講하는 강서시험이었다. 그런데, 정조대 조흘강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自作自書'할 수 있는 사람, '文筆'이 있는 응시자를 가리는 것이었다.[81] 이것은 『소학』의 고강을 통해서는 판별하기 어려운 자질이다. 이런 탓에 조흘강 때에 『소학』의 강서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평가도 진행하였다. 정조 15년(1791) 金羲淳과 丁若鏞은 조흘강관으로 참여하였는데, 詩賦의 작문에 필요한 韻字나 科文의 형식에 대한 질문으로 그 당락을 결정하였다.[82] 조흘강에 『소학』 고강 외에 작문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정조 24년(1800) 예조판서 李晩秀는 이에 대해 조흘강을 엄격하게 시행하려는 뜻은 좋으나 시험은 평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학』 고강만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원문의 音讀과 文義만 평가한다는 내용이 『과거사목』에 반영되었다.[83] 하지만 순조 18년(1818)에 다

79) 『정조실록』 권54, 정조 24년 4월 20일 임인; 『승정원일기』 순조 1년 1월 3일 경진.
80) 『순조실록』 권21, 순조 18년 5월 29일 병인.
81)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2월 22일 경진.
82)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8월 18일 경신.
83) 『정조실록』 권54, 정조 24년 4월 20일 임인.

시 『소학』 고강 외에 經史로 能文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84] 19세기 『소학』 조흘강은 『소학』 고강 외에 작문 능력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었다.

2) 생원·진사시의 부거도목 작성

19세기에도 꾸준히 부거도목이 작성되었다. 吳宖默의 『慶尙道固城府叢瑣錄』 중 고종 30년(1893) 기록에도 부거도목에 대한 언급이 있다.[85] 부거도목은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작성되었다. 그런데, 각 고을에서 조흘강을 시행하면서 부거도목의 작성 절차와 그 성격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시험장에서 조흘강을 실시하는 경우 각 고을에서 부거도목을 작성해 보내면 이에 근거하여 조흘강을 시행하고, 최종 응시자 명단인 녹명성책을 작성하였다. 부거도목은 고을단위에서 수령이, 녹명성책은 試所에서 녹명관이 작성하였다. 이후의 과거행정은 이 녹명성책이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고을 단위로 조흘강을 시행하면서 각 고을에서 부거도목과 녹명성책을 모두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녹명성책을 시소에 보냈다. 그 결과 이 녹명성책이 부거도목으로 인식되었고, 조흘강 합격자의 명단이라는 의미에서 捧講都目成冊, 照訖成冊으로도 일컬어졌다. 먼저 부거도목이 작성되는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순조 33년(1833) 서유구는 전라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해 11월 예조에서 식년시의 시행 일정을 알리는 關文이 도착하였다. 전라감사는 예조의 관문을 전달하는 甘結을 각고을에 발송하였다.[86] 이듬 해 1월 照訖講의 시행을 하명하는 비변사의 관문이 도착하자 다시 각 고을에 감결이 발송되었다. 여기에 조흘강을 마친 후 捧講都目, 곧 錄名成冊 2건을 감영에 보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87]

---

84) 『순조실록』 권21, 순조 18년 5월 29일 병인.
85) 吳宖默, 『慶尙道固城府叢瑣錄』 제1책, 계사년 5월 22일 巡甘.
86) 서유구, 『완영일록』 2책, 癸巳十一月二十一日.

감사의 감결을 받은 각 고을에서는 그 내용을 경내에 통지하였다. 그 과정은 경주 용산서원에 보낸 경주부윤의 下帖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감사의 감결을 받은 경주부윤은 식년시나 증광시의 시행 일정을 등서한 첩문을 용산서원 齋任에게 내려 보냈다. 여기에는 赴擧儒生都目을 올려 보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88] 그리고 조흘강의 시행을 통지하는 감결이 도착하자 다시 용산서원 재임에게 첩문을 내려 조흘강의 시행 일정을 공지하였다.[89]

경주부윤은 용산서원 재임에게 첩문을 내리면서 '所屬士子' 혹은 '院屬士子'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용산서원에서 소속 원생들에게 시험일정을 공지하고 부거도목을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실제 사정은 좀 달랐다.

경주에서는 향교, 옥산서원, 서악서원, 용산서원이 경내의 구역을 나누어 관의 帖文이나 유생통문의 전달을 분담하였다. 향교와 서원에 전달된 관첩과 통문은 다시 경내의 祠宇나 門中으로 전달되었다.[90] 학교의 네트워크를 통해 과거나 공도회, 백일장 등에 관련된 각종 교육행정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과거행정에서 용산서원이 담당한 역할은 陳試와 관련하여 경주부윤이 내린 帖文과 용산서원에서 올린 書目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경주부윤은 覆試의 시행에 앞서 용산서원에 복시 응시 자격자의 응시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첩문을 내려 보냈다.[91] 용산서원에서는 書目을 올려 사안을 보고하였다. 이 중 기묘년 2월에 작성한 서목에는 '本院所屬面'의 陳試成冊을 올려 보낸다는 내용이 있고,[92] 신묘년 3월의 서목에서는 '本院掌內'에는 陳試儒生이 없다고 보고하였다.[93] 즉, 관의 첩문은 용산서원에 내렸지만 용산서원은 교육

87) 서유구, 『완영일록』 3책, 甲午正月初九日.
88) 김경용, 『장서각 수집 교육·과거 관련 고문서 해제』, 민속원, 2008, 423면 첩문(경신 12월 초3일) 탈초 및 424면 첩문(무오 12월 초4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50, 659-660면 및 677면 영인 수록)
89) 김경용, 앞의 책, 426면 첩문(무오 7월 초7일) 탈초 및 첩문(정해 7월 초5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50, 678면 및 685-686면 영인 수록)
90) 박현순, 「조선후기 儒生通文의 전달 구조」, 『한국문화』 7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255-259면.
91) 김경용, 앞의 책, 432면 첩문(병진 정월 초3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50, 684면 영인 수록)
92) 김경용, 앞의 책, 430-431면 서목(기묘 2월 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50, 519면 영인 수록)

행정의 담당기구로서 관할구역인 소속면의 진시유생성책을 작성해 보냈다. 경주부윤이 용산서원 재임에게 내린 하첩은 용산서원이 아니라 용산서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내리는 것이었다. 순조 22년(1822) 당시 용산서원의 관할구역 東面이었다.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울진 담양전씨 전승 『赴擧儒生都目』이라는 필사본 책자가 전한다. 작성시점은 정조 3년(1779) 무렵이다.[94] 여기에는 모두 15명의 신상정보와 4조 정보, 호적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14명은 담양전씨인데, 8촌 이상의 친족도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담양전씨의 외손이다.[95] 이러한 구성으로 볼 때 이 『부거유생도목』은 동성촌락에서 작성한 부거유생의 명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촌락별로 작성된 부거도목이 관할 향교나 서원을 통해 수합되어 다시 고을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응시지원자 명단으로서의 부거도목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과거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가 면리제가 아닌 학교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비록 향교 유생안이나 청금록의 작성은 중지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를 통한 네트워크는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부거도목 역시 학교 네트워크의 범주 내에서 작성되었을 것이다.

실제 부거도목의 제출에 필요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학의 學籍과 같은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교육여건에 비추어 추론해 볼 여지는 있다. 인조 13년(1635) 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에는 旬製를 거쳐 생원·진사시 응시를 허용하였다고 한다.[96] 학교를 통해 시행하는 시험도 관학 교육과 과거 응시를 연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이다.

丁若鏞은 『牧民心書』에서 수령의 흥학활동으로 旬製, 白日場, 居接을 꼽았다.[97] 18-19세기 향교나 서원 소장 자료, 일기자료 등에서도 고을별로 순

93) 김경용, 앞의 책, 431면 서목(신묘 2월 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고문서집성』 50, 564면 영인 수록)
94) 맨 처음 기록된 전욱심(1735-1806)이 당시 44세로 기록되어 있다.
95) 한국국학진흥원, 『成冊1(赴擧儒生都目)』(담양전씨 후당 덕현파)
96)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7월 13일 신유.

제와 백일장, 거접이 빈번하게 시행된 것이 확인된다. 또 이를 조직화한 養士齋도 널리 운영되었다. 양사재는 각 고을에서 과거 준비를 위해 기금을 모아 마련한 書齋로 기간을 정해 놓고 居接을 시행하였다. 이른 시기의 사례는 현종 4년(1663) 화순향교의 양사재인데, 그 운영 양상은 능주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숙종 46년(1720)에 기금을 마련하여 양사재를 건립하고 매년 白日場이나 旬製를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한달간 居接하며 과거를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정조 3년(1779)에는 양사재와 별도로 元接廳을 설립하여 양사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기금을 낸 인물들로 양사재와 원접청의 先生案을 작성하고, 거접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수록한 井間案을 작성하였다. 양사재와 원접청의 거접은 1900년 전후까지 시행되었다.[98]

유생안과 청금록이 사라진 뒤에도 각 고을에서는 학계나 양사재, 순제, 백일장, 거접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생의 명부도 만들어졌다. 각 고을에서 부거도목을 작성하고 조흘첩을 발급하는 데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여부가 중요한 준거가 되었을 것이다.

응시 지원자의 명단이 수합되면 생원·진사시 시험 일정에 앞서 조흘강이 시행되었다. 전라감사 서유구가 내린 감결에는 각 읍에서 미리 응시자들의 都目成冊과 (四祖)單子를 받아 호적과 대조하게 하는 한편 조흘첩을 인쇄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강서 때는 그 자리에서 합격자에게 바로 조흘첩을 발급하고, 불통인 자는 都目에서 삭제한 후 그 결과를 담은 捧講都目成冊 2건을 작성하여 감영에 보내게 하였다.[99]

각 고을에서 조흘강을 시행한 모습은 경주부윤이 용산서원에 내린 첩문을 통해 볼 수 있다. 무오년(1858) 경주부윤은 식년시 생원·진사시의 시행을 앞두고 11일간 조흘강을 시행하였다.[100] 정해년(1887) 식년시 때도 11일간

97) 丁若鏞, 『牧民心書』 권8, 禮典六條 課藝.
98) 윤희면, 「養士齋의 設立과 運營實態」, 『정신문화연구』 1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10면; 「綾州 養士齋 硏究」, 『전남사학』 10, 호남사학회, 1996, 3-18면.
99) 서유구, 『완영일록』 3책, 甲午正月初九日.

16개 면을 6개 지역으로 묶어 날짜를 지정하여 조흘강을 시행하였다.[101]

이 과정에서 부거도목과 사조단자를 호적과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순조 18년(1818) 과폐절목이 반포된 직후에 尹愭는 당시의 조흘강과 관련하여 "戶籍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京鄕에서 모두 應講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102] 곧 호적에 입적되어야만 조흘강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때 호적과 대조하여 입적자에게만 응시를 허용한다는 규정은 현종 6년(1665)에 마련되었다.[103] 이후 합격자는 호적과 대조하여 입적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정조 12년(1788)부터 녹명단자를 호적대장과 대조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104] 현종 6년 당시에도 호적과 대조한 후 응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느슨하게 시행되다가 정조대와 순조대에 다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각 고을에서 조흘강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조흘강은 『소학』을 고강하는 시험이지만 순조 18년(1818)에 『소학』 고강 외에 經史로 能文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105]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科文을 지을 능력을 갖춘 자들을 선별하여 부거도목을 작성하도록 조언하였다.[106] 『소학』 고강보다는 과문의 작문 능력 평가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19세기 중엽 경상도 성주에서는 지역 學契의 講書로 照訖講을 대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당시 성주에서는 대사간을 지내고 낙향한 李源祚를

100) 김경용, 앞의 책, 426면 서목(무오 7월 초7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50, 678면 영인 수록)
101) 김경용, 앞의 책, 426면 서목(정해 7월 초5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50, 685-686면 영인 수록)
102) 尹愭, 『無名子集』 文稿 13책, 「科說」
103) 『科擧謄錄』(奎12909) 제3책, 031a면, 乙巳六月初一日
104) 黃胤錫, 『頤齋亂藁』 권46, 정조 14년(1790, 경술) 7월 24일 임인
105) 『순조실록』 권21, 순조 18년 5월 29일 병인
106) 丁若鏞, 『牧民心書』 권4, 吏典六條 擧賢

중심으로 學契를 결성하였는데, 고종 1년(1864) 수령과 논의하여 學契에서 유생명단인 講案을 작성하고, 『효경』과 『소학』의 講書를 시행한 후 이를 토대로 '赴擧都目'을 작성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감사에게 청원을 넣었다.[107] 감사 서헌순이 이를 수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學契의 강서로 조흘강을 대신하려 하였다는 점은 조흘강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조대 조흘강제도를 개편한 이래 조흘강은 생원·진사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하였다. 생원·진사시를 볼 때는 이 조흘첩을 소지해야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照訖帖의 매매가 성행하고 불법적으로 인쇄된 空名帖이 시중에서 거래되기도 하였다. 조흘첩의 매매가 성행했다는 것은 조흘강이 생원·진사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흘강의 시행 결과를 담은 녹명성책은 부거도목, 조흘성책 등으로 불리며 그 자체로 다른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순조 3년(1803) 북평사 柳台佐는 도단위의 旬題를 주관하였는데, 각 고을의 '照訖成冊'을 기초로 收券할 것을 신칙하였다.[108] 고종 30년(1893) 경상감사가 각 읍에 내린 講學 관련 사목에서는 '감시부거도목'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강학에 참여하도록 하여 생원·진사시의 부거도목이 교육활동의 준거 자료가 되었다.[109] 조흘강을 통해 선발된 유생들은 생원·진사시 응시의 모집단인 동시에 공교육 활동 대상의 모집단이기도 하였다.

3) 문과의 부거도목 작성

조흘강은 생원·진사시 초시 응시를 위한 자격 시험으로 문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문과 응시를 위한 자격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110] 하지만 문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시험을 마련

107) 李源祚, 『凝窩集』 권7, 「與徐方伯[憲淳]」
108) 柳台佐, 『監市謄錄』 癸亥(1803) 9월 25일.
109) 吳竑默, 『慶尙道固城府叢瑣錄』 제1책, 계사년 5월 22일 巡甘.

하지는 않았다.

문과의 경우에도 시험 일정이 결정되면 예조에서 감사, 감사에서 수령, 수령에서 경내로 시험일정이 전달되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갔다. 문과는 생원·진사시와 달리 조흘강이 없고, 시험 형식도 다기하여 마지막 응시 등록 절차인 녹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생원·진사시와 차이가 있었다.

문과는 초시 때 鄕試를 시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녹명하는 방법이 달랐다. 향시를 시행하는 식년시와 증광시는 각 고을의 수령이 부거도목을 작성하여 試所에 보냈다. 순조 34년(1834) 전라감사로 재직 중이던 서유구는 시험 40일전쯤에 '東堂赴擧儒生都目成冊' 2건을 작성하여 감영에 보내도록 각 고을에 통지하였다.[111] 경주부윤은 증광시의 시행날짜를 공지하며 부거도목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하명하였다.[112] 또 헌종 6년(1855)에는 庭試 초시 때 향시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경주부윤이 용산서원에 보낸 첩문에는 기일을 정해두고 부거도목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명하였다.[113] 향시를 시행한 식년시, 증광시, 정시 초시 때는 고을단위로 부거도목을 작성한 것이다.[114]

문과 향시 때 부거도목을 작성하는 기준은 포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원·진사시 응시자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자격도 얻지 못한 인물들에게 문과 응시를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원·진사시 응시자 수에 비하면 문과 응시자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세기 증광시 향시의 응시자 수를 보면 생원·진사시 응시자는 시험장별로 수천명에 이르지만 문과 응시자 수는 수백명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헌종 10년(1844) 충청우도 생원·진사시 응시자는 초장 2,540명, 종장 2,290명이었는데, 문과 응시자 수는 초장 151명, 중장 411명, 종장 280명에

110) 『승정원일기』 순조 19년 3월 15일 정미.
111) 서유구, 『완영일록』 3책, 甲午正月十八日.
112) 김경용, 앞의 책, 424면 첩문(무오 12월 초4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50, 677면 영인 수록)
113) 김경용, 앞의 책, 447면 첩문(을묘 정월 초6일) 탈초(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50, 693-694면, 영인 수록)
114) 이후 헌종 10년, 헌종 11년, 철종 4년, 철종 6년, 철종 9년, 철종 13년의 정시에도 초시 때 향시를 시행하였다.

그쳤다. 문과 응시자 수는 생원·진사시에 비하면 대략 5분의 1수준이었다. 정시의 경우 식년시나 증광시에 비하면 응시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철종 9년(1858) 평안남도 식년시 진사시 응시자는 6,516명이었는데, 같은 해 정시 응시자는 평안도 전체가 5,130명으로 역시 생원·진사시 응시자에 비하면 그 수가 상당히 적었다.[115] 생원·진사시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 일부만이 문과에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순조 3년(1803) 함경도 북평사 유이좌는 식년문과 초시를 시행하면서 초시 전에 예비시험으로 사서삼경을 고강하고 통과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공지하였다.[116] 이것은 법제화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함경도에서만 시행한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공지는 사전에 무분별한 응시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별시·정시·알성시의 경우는 녹명법이 달랐다. 효종 5년(1654) 校籍에 등록된 유생들만 과거 응시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입법됨에 따라 모든 과거에 교적 여부에 따라 부거도목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효종 7년(1656) 별시를 시행할 때부터 이 원칙이 흔들렸다. 당시 각읍에서 부거도목을 작성하여 올려 보냈지만 유생들이 도목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상경하여 임시로 응시를 허락한 것이다.[117] 현종 11년(1670) 별시 초시를 시행할 때에도 도목을 올려보내게 했지만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118]

그런데 정조대에는 각 고을에서 부거도목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사례로 이야기되었다. 정조 6년(1782) 3월의 알성시 때도 각 군현에서 녹명을 하고 성책을 올려 보내도록 하는 일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 당시 예정된 시험 날짜가 목전에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119]

당시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정시와 알성시는 고을별로 작성하는 부거도목이

115) 박현순, 앞의 책, 231면 〈표2〉 및 236면 〈표3〉 참조.
116) 柳台佐, 『監市謄錄』 癸亥 九月 初三日.
117) 『稽制司別謄錄』(奎12976) 34면, 丙申(1656)七月十六日四.
118) 『승정원일기』 현종 11년 9월 11일 을축.
119) 『승정원일기』 정조 6년 2월 10일 정축.

아니라 한양의 四館所에서 시행하는 녹명을 근거로 운영되었다. 응시자들이 四祖單子를 갖추어 녹명을 하면, 녹명소인 사관소에서 이를 성책하여 試所로 보내 응시자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녹명이 지체되어 성책을 만드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120]

실제 사정은 시험 때마다 달랐다. 정조 2년(1778) 7월에 시행한 알성시 때는 미리 녹명단자를 걷어 성책하여 이를 근거로 입장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상당히 적었다고 한다. 이 사례는 응시자를 잘 관리한 사례로 언급되었다.[121] 반면 정조 6년(1782) 11월 정시 초시 때에는 녹명성책이 없이 號牌로 응시자의 출입을 관리하였다.[122] 이런 사례들은 시험에 앞서 각 고을에서 부거도목을 올려 보내는 일이 상례가 아니었고, 아예 시험 당일 응시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녹명성책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조 19년(1819)에는 정시 초시 전에 경외에서 응시자들의 도목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게 하였다. 이 때 응시자가 크게 줄어 당초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던 시소를 2개소로 줄이고 도별로 나누어 배정하였다.[123] 그러나 계속 각 고을에서 부거도목을 작성하게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을단위로 부거도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응시자들은 각자 錄名所에서 錄名單子, 곧 四祖單子를 제출하고 녹명을 하는 방식으로 응시 지원이 이루어졌다. 녹명단자는 戶籍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합격자는 호적과 대조하여 입적 여부와 신원 상의 하자를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규정은 현종 6년(1665)부터 적용되었다.

정시·알성시·춘당대시에서는 숙종대부터 출입 시에 號牌를 조사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과장에 들어갈 때 호패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停擧한다는 법제도 만들어졌다.[124]

---

120)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1월 3일 을유.
121)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10월 15일 계묘.
122)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1월 11일 갑진.
123) 『승정원일기』 순조 20년 8월 25일 무신; 같은 책, 순조 20년 8월 26일 기유.
124) 차미희, 「속대전의 문과시험 정거 규정 검토」, 『사학연구』 64, 한국사학회, 2001, 80-86면; 박현순 앞의 책, 98-101면.

과장에서 號牌를 조사한 것은 응시자를 따라 들어오는 '隨從'이나 '雜流'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본인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응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과장에 따라 들어오는 부류로 숙종대 이래 친림시 과장을 혼란하게 하는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호패를 통해 응시자와 '수종'를 판별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호패 상의 職役 밖에 없었다. 즉, 그들이 호적 상에 幼學으로 대표되는 儒生의 직역으로 등재되어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영조 25년(1749) 科場에서 수종 혐의자를 체포한 적이 있었다. 영조는 戶籍을 조사하여 그 직역으로 분간하게 하였는데, 幼學, 通德郞, 貢生, 生徒로 호적에 등재된 경우는 응시자로 인정되었다.[125]

정조대 이래 응시자의 증가 문제는 이른바 幼學을 冒稱하는 자들이 무분별하게 과거에 응시하기 때문이라고 인식되었다.[126] 이전 시기 모칭 유학이 주로 軍役의 문제로만 언급된 것에 더하여 이제는 과거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호적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학의 직역을 획득한 이들은 18세기 이래 꾸준히 증가하였다.[127] 과거 응시자의 증가는 호적상 유학의 증가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5. 맺음말

조선시대 과거 응시 자격은 주로 신분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제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응시에 요구되는 학업 조건이 실질적인 과거 응시 자격 요건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학업 조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응시자 명단인 赴擧都目을 작성하는 기준과 작성 과정을 검

125)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9월 1일 병오.
126)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10월 12일 정미; 『승정원일기』 순조 20년 7월 9일 계해.
127) 현전하는 『단성호적』에서 법물야면의 幼學戶 비율은 숙종 4년(1678)에는 5.7%에 그쳤으나 정조 13년(1789)에는 20.9%로 증가하였다. 19세기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순조 25년(1825)에는 29.0%, 헌종 12년(1846)에는 50.5%, 고종 19년(1882)에는 81.2%에 이르렀다.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법물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37면.

토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응시자의 모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국가의 이상은 학교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과거를 통해 그들을 선발하여 관료로 등용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관학 교육과 과거를 연계시켜 학교를 매개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조선초기에는 圓點이나 書徒와 같은 官學 수학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사족층의 향교 수학 기피가 일상화되면서 명종 8년(1553) 學籍의 보유와 조흘강을 통한 학력 평가로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17세기에 재천명되어 인조 원년 생원·진사시 초시에 소학 조흘강을 도입하였고, 효종 5년(1654) 官學 學籍 보유자만에게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관학의 학적을 기초로 과거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생안이 정비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17세기 이래 유생안은 사족유생들의 신분의식과 낙강교생충군정책과 맞물리며 지역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응시자 명단인 부거도목을 작성하는 방식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향교 유생안이나 청금록을 기초로 과거 응시 명단인 부거도목을 작성하고 과거 응시자를 관리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18세기 후반 유생안이나 청금록의 작성이 중지되면서 학적을 통한 과거 응시 자격 부여는 그 실효를 상실하게 되었다. 유생안이나 청금록과 같은 유생 명부가 소멸된 상황에서 부거도목이 무엇을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면리제에 기초한 일반 행정과 달리 교육 행정은 향교와 서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부거도목도 학교 네트워크 참여자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을별로 시행된 旬製, 백일장, 居接이나 養士齋, 學契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여부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향교의 유생안이나 청금록은 작성되지 않았지만 고을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형식화되었던 조흘강 제도가 정비되었다. 정조·순조대에 걸쳐 정비된 조흘강은 시험장의 녹명소에서 시행하던 조흘강을 각 고을의 수령이 주관하게 하였다. 또 시험 내용을 『소학』 고강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

여 문장 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비된 조흘강은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생원·진사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하였다.

문과의 부거도목은 생원·진사시 응시자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을 것이다. 문과에는 별도의 응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문과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정시·알성시의 경우에는 대개 부거도목을 작성하지 않았고, 과거 행정의 준거가 되는 錄名成冊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는 戶籍과 號牌 상에 기재된 儒生 자격을 명시하는 職役이 응시 자격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었다.

官學과 과거 응시를 연계시키려는 국가의 이상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의 계속적인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과거 응시자를 관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응시 자격을 갖춘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과거 응시자의 증가 양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이상, 국사편찬위원회)
琴 輔, 『梅軒集』
李 珥, 『栗谷全書』
尹 愭, 『無名子集』
丁若鏞, 『牧民心書』
李源祚, 『凝窩集』(이상,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李文楗, 『默齋日記』
柳希春, 『眉巖日記』
黃胤錫, 『頤齋亂藁』
徐有榘, 『完營日錄』
吳宏默, 『慶尙道固城府叢瑣錄』(이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柳台佐, 『監市謄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成冊1(赴擧儒生都目)』(한국국학진흥원 소장)
『稽制司別謄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976)
『科擧謄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909)
『學校謄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2877)
「(安東鄕校)萬曆九年十月日校中完議」(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6, 1994, 109-118면 수록)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경북향교자료집성』 Ⅰ-Ⅲ, 영남대 출판부, 1992.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전라남도, 1987.
김경용, 『장서각 수집 교육·과거 관련 고문서 해제』, 민속원, 2008.

김경용, 「조선중기 과거제도 정비 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20-1, 교육사학회, 2010.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2
박현순, 「조선후기 儒生通文의 전달 구조」, 『한국문화』 7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_____,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배재홍, 「조선후기 서얼 과거합격자의 成分과 官歷」, 『조선사연구』 2, 복현사학회, 1993.
_____,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서얼의 존재양태와 향전」, 『복현사림』 15, 경북사학회, 1992.
소순규, 「朝鮮前期 幼學의 大科 급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보』 70, 고려사학회, 2018.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법물야면 유학호의 분포와 성격」,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유기선, 「17-18세기 尙州鄕校의 靑衿儒生」, 『한국서원학보』 5, 한국서원학회, 2017.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
_____, 「養士齋의 設立과 運營實態」『정신문화연구』 1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_____, 「綾州 養士齋 硏究」, 『전남사학』 10, 전남사학회, 1996.
이상무, 「17-18세기 식년시 성균관 원점법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36-3, 한국교육사학회, 2014.
_____, 「조선시대 문과 응시자격에서 소과 입격의 문제 검토」,『한국교육사학』 40-4, 한국교육

사학회, 2018.
이성무,「조선초기 문과의 응시자격」,『논문집』9, 국민대, 1974.
李鍾日,「18・19세기의 서얼소통운동에 대하여」,『한국사연구』58, 한국사연구회, 1987.
차미희,「속대전의 문과시험 정거 규정 검토」,『사학연구』64, 한국사학회, 2001.
_____,「조선 후기 文科제도—응시자격을 중심으로—」,『사총』45, 고려대 역사연구소, 1996.
_____,『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1999.
_____,「『溪巖日錄』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文科 경상도 鄕試」53,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2013.

【Abstract】

Qualifications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Bugeodomok* in the Joseon Dynasty

Park, Hyun-Soon*

This paper delves into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creation of the *bugeodomok*, an official roster of candidates partaking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academic criteria required for the exam. This will provide insights into comprehending the qualifications sought from the examination applicants and how its population was defined.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government attempted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candidacy based on enrollment in government-oper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due to the growing tendency of local literati to avoid local public schools, this standard underwent transformation in the eigh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towards the retention of academic records and the outcomes of the preliminary exam, known as *joheulgang*. This criterion was subsequently reaffirmed during the 17th century, culminating in the introduction of preliminary exam assessing *Elementary Learning* for classics and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 in the first year of King Injo's rule. This further solidified the principle of conferring examination candidacy solely to those who had received government-sponsored education, which was formally established in the fifth year of King Hyojong.

By the late 18th century, the discontinuation of *yusaengan* in local public schools or *cheonggeumnok* resulted in the diminishing efficacy of using academic records as the basis for qualification. Instead, the compilation of a list of examination candidates could be prepared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nitiated by individual counties. In cases where such lists could not be compiled, eligibility for the examination was determined by an individual's inclusion in the household registration and their possession of the occupational title of a Confucian student.

The government showed a consistent effort to manage the examination candidates in coordination with state-sponsored education. Amidst this endeavor, the number of qualified candidates sought by the state continued to increase, culminating in the surge in examination applicants within late Joseon society.

Keywords: civil service examination, joheulgang, bugeodomok, qualifications for examination, yusaengan, cheonggeumnok.

접수일: 2023.06.29.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5.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